

#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
----------	-----

2023. 4. 13.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4. 5. / 전혜연 의원 등 10명
- 나. 회부일자 : 2023. 4. 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4. 13.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확대하여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내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제15조)
  -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 (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용관)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확대하여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4호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